호 외 / 2010년 11월 12일

	기 관 의 장
선	
람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비전홍보담당관

【입법예고】

• 익산시공고 제2010-15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광고 제20]	l0-1525호	익산시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	예고	2	7
-----	-----	---------	----------	-----	------	--------	-------	--------	----	---	---

회				
람				

·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비전홍보담당관 TEL: 063) 859-5029

익산시공고 제2010-15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12 일 익 산 시 장

1. 개정 이유

유사·중복업무 일원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 부서 명칭 변경, 정부의 주요정책을 행정조직에 반영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청 : 5국 28과·담당관 → 5국 27과·담당관(△1과)

1) 신 설: 왕궁환경개선과

2) 직제조정 :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부시장 직속(행정지원관)

농 산 과, 축 산 과 → 농업기술센터

3) 명칭변경

국(2) : 기획행정국 \rightarrow 기획재정국

농림환경국 → 환경녹지국

과(5): 비전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지 역 경 제 과 → 일자리창출과

주택관리과 → 주 택 과

교통물류과 → 교통행정과

도시미관과 → 도로관리과

나. 직속기관 : 2소·센터 5과 → 2소·센터 7과(+ 2과)

1) 명칭변경

 $\operatorname{Pl}(2)$: 인력육성과 \rightarrow 농촌지원과

기 술 보 급 과 → 농산유통과

다. 사 업 소 : 2단 7소 4과 → 2단 6소 4과(△1소)

1) 폐 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라. 출 장 소 : 1 출장소 → 1 출장소(변동없음)

마. 읍 면 동 : 29 읍면동 → 29 읍면동(변동없음)

바.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일괄 개정(안 부칙)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1 익산시 시청로 1 익산시 행정지원과 (전화 : 859-5731, FAX : 859-50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859-5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유사·중복업무 일원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 부서 명칭 변경, 정부의 주요정책을 행정조직에 반영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청 : 5국 28과·담당관 → 5국 27과·담당관(△1과)

1) 신 설: 왕궁환경개선과

2) 직제조정 :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부시장 직속(행정지원관)

농 산 과, 축 산 과 → 농업기술센터

3) 명칭변경

국(2) : 기획행정국 \rightarrow 기획재정국

농림환경국 → 환경녹지국

과(5): 비전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지 역 경 제 과 → 일자리창출과

주택 라리 과 → 주 택 과

교통물류과 → 교통행정과

도시미관과 → 도로관리과

나. 직속기관 : 2소·센터 5과 → 2소·센터 7과(+ 2과)

1) 명칭변경

과(2): 인력육성과 → 농촌지원과

기 술 보 급 과 → 농산유통과

다. 사 업 소 : 2단 7소 4과 → 2단 6소 4과(△1소)

1) 폐 지 :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라. 출 장 소 : 1 출장소 → 1 출장소(변동없음)

마. 읍 면 동 : 29 읍면동 → 29 읍면동(변동없음)

바.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일괄 개정(안 부칙)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 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행정 지원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전략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를 둔다.
 -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정의 기획·조정
 - 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 3. 법제 및 소송업무
- 4.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 5.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6.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 7.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세입결산
- 8. 자금관리 및 시금고 계약·검사·감독
- 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
- 10. 각종공사 도급·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12. 본청 및 읍면동 신·증·개축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13.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14. 전산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 15. 통신에 관한 사항
- 16. 통계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제6조(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를 둔다.
 - ②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2. 과학기술 육성 및 정책 개발
 - 3. 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
 - 4.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5. 입주기업체 지원
 - 6.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허가·변경승인 및 관리
 - 7. 농공산품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관리
 - 8. 지역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수립

- 9.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 10. 「전기사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1. 문화재보호 및 관리
- 1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13.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
- 14. 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 15. 문화 콘텐츠 및 영상 관련업무
- 16.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
- 17.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 18.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친화정책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 5. 호국보훈 업무
 - 6.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
 - 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8.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9.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 징수관련 업무
 - 10. 청소년 복지 증진
 - 11. 아동복지 증진
 - 12. 보육에 관한 사항
 - 13. 여성친화적 도시관련 업무 및 여성단체 관리

- 14. 노인복지 증진
- 15. 장묘시설 관리
- 16. 주민·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
- 17.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 18.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 19.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 2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공원과, 왕궁환경개선과를 둔다.

-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2.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 5.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6.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7. 재활용에 관한 사항
 - 8.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 10. 녹지 및 체육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 11.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를 둔다.

-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원도심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도시경관사업 추진
- 4.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5. 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 6.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8.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9. 재난관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10.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11.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12.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 13.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 15.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시에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보건지소에 소장·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치과진료 및 한방·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4.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 5.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6. 결핵·성병·한센병 등 전염병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 7. 보건통계의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8. 노인보건 및 성인병 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지역특화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촌생활향상지원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2.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 3.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 4.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관광농업,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 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하 사항
- 8.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 9.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단장·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을 두고. 단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하수도사업단
 - 가. 일반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 나. 공업용 상수도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다. 온탕급수사업 및 그 부대사업
 - 라. 상하수도사용료 과징 조정 및 세입·세출 결산

- 마. 지하수 관리
- 바.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및 방류관로 유지관리
- 사. 상·하수도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자.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 아.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물 운영관리
- 자. 상·하수도 등에 관련된 업무
- 차. 하수도 관련 민간투자사업(BTL, BTO)에 관한 사항
- 카. 오수·분뇨 기본계획 수립 및 무단방류 지도단속
- 타.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 2.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책사업 지원
 - 나.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 다. 국내외 기업·연구소 및 공공기관 유치
 - 라.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민생활관
 - 가. 국민생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시민의 문화생활·체육진흥사업
 - 다.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 라.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유적전시관
 - 가. 왕궁리유적전시관, 마한관, 서동공원, 입점리고분전시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재 유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 관리
 - 다. 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에 관한 사항
- 5. 시립도서관
 - 가.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

- 나. 도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 라. 문화교육 강좌운영
-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6. 차량등록사업소

- 가.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나.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 마. 이륜차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바.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
- 사.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아. 자동차의 말소, 저당설정, 압류, 해제 및 임시운행에 관한 업무
- 자.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 차.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업무
- 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교부
- 타.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업무
- 파.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 업무

7. 보석박물관

- 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보석산업 육성
- 다.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감정·분석·조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마. 박물관 부대시설 대부(대관)사용 허가
- 바. 주얼팰리스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부과·징수 단, 매장 내 경비, 보안은 입주업체에서 관리
- 사.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8. 솜리문화예술회관
 - 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부대시설 대부(대관)사용 허가
 - 다. 공연 및 작품전시

제5장 출장소

- 제19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북부권 8개 읍·면지역에 관한 사항)를 관장한다.
 - 1. 출장소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2. 서무·인사·보안·소내 복무단속
 - 3.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 4.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 5. 지적측량 및 면적 측정검사
 - 6. 지적 민원 처리
 - 7. 지적 불부합 정리
 - 8.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 9. 지적도면 전산화 유지관리
 - 10.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 11.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12.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14.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 15.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
- 16. 지적정보센터 운영
- 17. 지적정보관리시스템(KLIS)
- 18.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 19. 지적측량 소송수행·지적재조사 사업
- 20.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 21. 전자민원(G4C) 창구 운영
- 22.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23.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업무
- 24.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록관리
- 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기재사항 변경
- 26. 건축허가 및 신고
- 27.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28. 오수정화조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 29.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 3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31.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32. 출장소 공인 관리
- 33. 그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 34.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 35.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면·동

- 제22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업무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도시미관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교통물류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 ③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④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2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⑤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⑥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호 중 "농림환경국장"을 각각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한다.

- ⑦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농림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⑧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림화경국장"을 삭제한다.
- ⑨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축산관리과장"을 "축산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 ⑩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가목 중 "인력육성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 ①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력육성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인력육성과"를 "농촌지원과"로 한다.
- ①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3] 「익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4)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직·전기직·토목직"을 "시설직·공업직"으로 한다.
- 16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미관과장(당연임명직)"을 "도로관리과장 (당연임명직)"으로 한다.
- (17) 「익산시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사업업무담당팀장"을 "보건사업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 (18)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 ⑩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 ② 「익산시상수도도수및신고포상금(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팀장"을 각각 "과장" 으로 한다.
- ②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한다.

②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제3호,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 ②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농림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②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②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림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 ②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③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③ 「익산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획행정국장○○○(인)"을 "행정지원관○○○(인)"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계장"을 "담당"으로, "계원"을 "담당자"로 한다.

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익산시 사무중 함열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행정지원관	1. 소속공무원 복무에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	「지방공무원법」
	관한 권한	지정	제6조 및 「익산시
		2. 소속직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복무에 관한 사항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행정지원관	1.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	 6급이하 공무원 근무 지정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무관리규정」 제6조
주민생활 지원국	1.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분묘 개장신고 납골, 화장신고 매장, 개장신고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 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허가 및 신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위탁보호 신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 	「아동복지법」제10조
	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부재자 확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4.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한 권한	1. 게이트볼장, 함열·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방자치법」제104조
농업기술 센터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법」제35조 및 제54조
건설교통국	1.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제48조
	2. 자동차 강제 처리	1. 방치자동차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행정지원관	1. 소속 직원의 복무에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	「지방공무원법」
	관한 권한	지정	제6조 및 「익산시
		2. 소속 직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복무에 관한 사항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무관리규정」 제6조
주민생활	1.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	1. 분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지원국		2. 납골, 화장신고	법률」제8조, 제14조,
		3. 매장, 개장신고	제15조 및 제27조
		4.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	
		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허가 및 신고	
		5.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신고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아동복지법」제10조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이동 보호신청 및 조사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제20조
	, _ 2 3 3 3	징수	및 제40조
_		2. 부재자 확인	
농업기술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원부의 작성 관리	' ' '
센터		2. 농지원부 열람 및	제50조
		등본 교부	

③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③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농식품산업과장"을 "농산과장"으로, "기술보급과장"을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 ③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농식품산업과장"을 "농산과장"으로, "기술보급과장"을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 ③ 「익산시 친화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역 경제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관팀·소장"을 "주관과·소장"으로 하고. 별표의 제1호 가목 구분란 중 "본부·단·소장실"을 "국·단·소장실"로, "팀장실"을 "과장실"로, "팀원"을 "담당자"로 한다.

의산시 **호외 / 2010년 11월 12일**

[별표 1]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보건소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 전역
함열읍 보건지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49	함열읍 일원
오산면 보건지소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4-8	오산면 일원
황등면 보건지소	익산시 황등면 황등6길 47	황등면 일원
함라면 보건지소	익산시 함라면 함라1길 30	함라면 일원
웅포면 보건지소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8	웅포면 일원
성당면 보건지소	익산시 성당면 황성로 727	성당면 일원
용안면 보건지소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383	용안면 일원
낭산면 보건지소	익산시 낭산면 오동정길 1	낭산면 일원
망성면 보건지소	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726	망성면 일원
여산면 보건지소	익산시 여산면 여산동촌길 27-10	여산면 일원
금마면 보건지소	익산시 금마면 금마4길 47	금마면 일원
왕궁면 보건지소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44	왕궁면 일원
춘포면 보건지소	익산시 춘포면 춘포 2길 11	춘포면 일원
삼기면 보건지소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66	삼기면 일원
용동면 보건지소	익산시 용동면 용동로 284	용동면 일원
오산 신석 보건진료소	익산시 오산면 새들길 8	북신석, 신석, 광지, 만수, 월포, 옥포, 신후, 신상, 영성, 남참, 북참, 문화, 금몽, 야동
황등 신성 보건진료소	익산시 황등면 시와로 335	신성, 대성, 신화, 무동, 구자, 도촌
황등 성내 보건진료소	익산시 황등면 성내1길 2-7	성내1구·2구, 송곡, 대동, 소산, 황교 1·2
함라 신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함라로 243	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 장등

익산시 💆 시보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웅포 하제 보	건진료소	익산시 웅포면 제성1길 4	하제1·2구, 지종, 성동, 상제 1·2구, 매곡
	보건진료소	익산시 웅포면 대마길 19-5	소마, 대마, 동산동, 서산동, 고창, 신촌, 진소, 소맹
	건진료소	익산시 성당면 한틀길 52	대기, 회선, 하와, 간교
성당 두동 보	건진료소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3-11	두동, 외두, 내난, 택촌, 교항
:	건진료소	익산시 용안면 법성1길 22-14	법성, 석우, 간이, 송곡, 용두, 을산, 순풍
:	건진료소	익산시 낭산면 호암신동길 35	시명, 신동, 내돈, 외돈, 노동, 하단
:	건진료소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223	장암, 상낭, 하낭, 외성, 내성, 신북
	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내촌1길 12	내촌, 교황, 미동, 방축, 지장, 신흥, 화정, 동촌
	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선리1길 10-1	선리, 작산, 신용, 무동,무서, 신북, 신풍, 포변
	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금지길 22-47	금지, 부평, 라암, 화북, 화남, 라평, 신덕, 상포, 중포, 하포
	건진료소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21-6	원태, 덕사, 노동, 관연, 외사, 현천, 누항, 유점, 호월
-	건진료소	익산시 금마면 도천길 141-3	도천, 황각, 구룡, 종평
	건진료소	익산시 금마면 용순길 253	서편, 용순, 동편, 향산, 노상
:	건진료소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21-6	용남, 송선, 금광, 학제, 사곡, 동통, 연정
:	건진료소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107	상발, 하발, 앵금, 기양, 신기촌, 마동, 평리
: -	건진료소	익산시 춘포면 노적1길 7	신동, 노적, 심암, 원정, 갈전
	보건진료소	익산시 춘포면 원오산1길 43-2	원오산, 광동, 문덕, 안수, 담월
:	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연동길 22	연동, 죽청, 채산, 마동, 석불
:	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96	대제, 소제, 궁교, 필동, 당촌, 각동, 삼기산
용동 양촌 보	건진료소	익산시 용동면 화왕로 190	양촌, 와동, 동고창, 화실, 서고창, 연화, 화배, 신화, 창목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익산시 인북로 32길 1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유적전시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1로 99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41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시 선화1로 4길 2

[별표 4]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19조제2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함열출장소	이지가 참여 이지네크 1700	성당면 일원
임원물생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익산시공고 제2010-152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12 일 익 산 시 장

1. 개정 이유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 전담부서 신설과 농업관련 조직의 일원화, 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수행을 법적 의무화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종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4)

- 1) 직종별 정원 조정
 - 기능직 : 225명 → 224명 (△1명)
 - 연구사: 7명 → 8명 (+1명)
- 2)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73명 → 76명 (+3명)
 - 6급이하 : 1,005명 → 1,004명 (△1명)
 - 지도관 : 4명 → 2명 (△2명)
- 3) 한시 정원 조정
 - 5급 : 1명 → 2명 (+1명)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 751 익산시 시청로 1 익산시 행정지원과

(전화 : 859-5731, FAX : 859-5059)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859-5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출 일: 2010. 12.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기획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 전담부서 신설과 농업관련 조직의 일원화. 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수행을 법적 의무화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종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4)

- 1) 직종별 정원 조정
 - 기능직 : 225명 → 224명 (△1명)
 - 연구사 : 7명 → 8명 (+1명)
- 2)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73명 → 76명 (+3명)
 - 6급이하 : 1,005명 → 1,004명 (△1명)
 - 지도관 : 4명 → 2명 (△2명)
- 3) 한시 정원 조정
 - 5급 : 1명 → 2명 (+1명)

3. 참고 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
-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워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란 총계 "1.088" 을 "1.090" 으로 하고, 일반직 5급란 총계 "73"을 "76"으로, 본청 "28"을 "27"로, 직속기관 "3"을 "7"로 하며, 6급이하 계란 총계 "1,005"를 "1.004" 로 하고, 연구직 계란 총계 및 연구사란 총계 "7"을 각각 "8"로 하며, 지도직 계란 총계 및 직속기관 "43"을 각각 "41"로 하고, 지도관 란 총계 및 직속기관 "4"를 각각 "2"로 하며, 기능직 계란 총계 "225"를 "224"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3	1	2		
4급	1		1	2012. 5. 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5급	2	1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왕궁환경개선과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9급 1로 화원조치 한다.

익산시 **조건** 시보 호 외 / 2010년 11월 12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u>(</u>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 기관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 기관	
총계	1,395					총계					
일반직 계	1,088					일반직 계	1,090				
5급	<u>73</u>	<u>28</u>		<u>3</u>		5급	<u>76</u>	<u>27</u>		7	
6급이하 계	1,005					6급이하 계	1,004				
연구직 계	7					연구직 계	8				
연구사	7					연구사	8				
지도직 계	43			43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4			<u>4</u>		지도관	2			2	
기능직 계	<u>225</u>					기능직 계	224				

현 행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신설>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계	<u>2</u>	<u>0</u>	<u>2</u>		
<u>4급</u>	1		1	2012. 5. 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u>5급</u>	1	<u>O</u>	1	2012. 5. 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개 정 안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u>본청</u>	사업소	한시기한	비고
<u>일반직계</u>	<u>3</u>	1	<u>2</u>		
4급	<u>1</u>		<u>1</u>	2012. 5. 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5급	<u>2</u>	1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왕궁환경개선과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 법 규 명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직급 조정 : 9급 △1 → 5급 + 1, 10급 △1 → 연구사 + 1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52,798		
1. 인 건 비	38,344		
	27,568	- 5급 :	2,842,800원 × 12월 × 1명 = 34,113,600
가. 기본급		- 9 ゴ :	919,600원 × 12월 × △1명 = △11,035,200
71. 71亡日		- 10급 :	828,100원 × 12월 × △1명 = △9,937,200
		- 연구사:	1,202,200원 × 12월 × 1명 = 14,426,400
	2,297	- 5급 :	2,842,800원 × 100% × 1명 = 2,842,800
」、ココンrl		- 9급 :	919,600원 × 100% × △1명 = △919,600
나. 정근수당		- 10급 :	828,100원 × 100% × △1명 = △828,100
		- 연구사:	1,202,200원 × 100% × 1명 = 1,202,200
	360	- 5급 :	140,000원 × 12월 × 1명 = 1,680,000
다. 교통보조비		- 9급 :	120,000원 × 12월 × △1명 = △1,440,000
		- 10급 :	120,000원 × 12월 × △1명 = △1,440,000
		- 연구사:	130,000원 × 12월 × 1명 = 1,560,000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2,757	- 5급 :	2,842,800원	×	120	0% ×	1명	=		3,411,360
리 머저중기비		- 9급 :	919,600원	×	120	0% ×	△1명	=	_	△1,103,520
라. 명절휴가비		- 10 ^그 :	828,100원	×	120	0% ×	△1년	=		△993,720
		- 연구사:	1,202,200원	×	120	0% ×	1년	=		1,442,640
	4,604	- 5급 :	2,842,800원	×	200.	4% ×	17	녕 =		5,696,970
마. 가계지원비		- 9급 :	919,600원	×	200.	4% ×	△17	₹ =	۷	1,842,880
"F. / [서[시전비]		- 10 급 :	828,100원	×	200.	4% ×	△17	형 =	_	1,659,510
		- 연구사:	1,202,200원	×	200.	4% ×	17	령 =		2,409,210
	758	- 5급 :	2,842,800원	×	0.03	× 11	×	1명	=	938,120
바. 연기보상비		- 9급 :	919,600원	×	0.03	× 11	. × .	△1명	=	△303,470
", U,E,6"		- 10 7 :	828,100원	×	0.03	× 11	×	△1명	=	△273,270
		- 연구사:	1,202,200원	×	0.03	× 11	×	1명	=	396,730
	О	- 5급 :	130,000원		×	12월	! ×	1명	=	1,560,000
사. 정액급식비		- 9급 :	130,000원		×	12월	! × .	△1명	= 2	△1,560,000
\\[\(\gamma\) \\\\\\\\\\\\\\\\\\\\\\\\\\\\\\\\\		- 10 ⁻⁷ :	130,000원		×	12월	! × .	△1명	= ,	△1,560,000
		- 연구사:	130,000원		×	12월	! ×	1명	=	1,560,000
2. 물 건 비	7,860									
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	- 350,00	0원 × 1과		×]	12월		=	4	1,200,000
나.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200	- 5급 :	100,000원	×	12월	l ×	1명	=		1,200,000
	2,460	- 5급 :	250,000원	×	12월	j ×	1명	=		3,000,000
el alanan		- 9급 :	105,000원	×	12월	<u>]</u> × 2	△1명	=	\triangle	1,260,000
다. 직급보조비		- 10급 :	95,000원	×	12월	<u>]</u> × ,	△1명	=		1,140,000
		- 연구사 :	155,000원	×	12월	j ×	1명	=		1,860,000

익산시 **호외 / 2010년 11월 12일**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3. 이전경비	6,594					
	2,986	- 5급 :	2,842,800원 ×	130% ×	1명 =	3,695,640
가. 성과상여금		- 9 기 :	919,600원 ×	130% ×	△1명 =	△1,195,480
/I. 0~10°10		- 10급 :	828,100원 ×	130% ×	△1명 =	△1,076,530
		- 연구사:	1,202,200원 ×	130% ×	1명 =	1,562,860
	2,433	- 5급 :	240,890원 ×	12월 ×	1명 =	2,890,680
나. 연금부담금		- 9 급 :	100,810원 ×	12월 ×	△1명 =	△1,209,720
4. Cotto		- 10급 :	75,560 ×	12월 ×	△1명 =	△906,720
		- 연구사:	138,250원 ×	12월 ×	1명 =	1,659,000
	1,175	- 5급 :	118,330원 ×	12월 ×	1명 =	1,419,960
다. 국민건강		- 9급 :	45,550원 ×	12월 ×	△1명 =	△546,600
보험료		- 10급 :	38,500원 ×	12월 ×	△1명 =	△462,000
		- 연구사:	63,640원 ×	12월 ×	1명 =	763,680

※ 직급기준 : 5급 25호봉, 9급 3호봉, 10급 3호봉, 연구사 3호봉